안수용 할머니 사건 요약 일지

안수용 조남희 부부는 하숙집과 카센타를 운영하며 살던 노부부였음.
사건 식별의 편의를 위해 철거는 ◎표시를, 소송은 ●표시를 하였음.

<95년도>

-11월 9일 오전 9시 경

원인 모를 화재 발생. 10여평 정도 소실. 당시 성북구청 공무원 원철이 현장확인 뒤 엄동설한에 집이 망가졌으니 급히 수리를 하라고 함. 재해복구를 며칠 뒤 시작함.

그리고 며칠 후부터 신재균이 (허위)진정[1]을 성북구청에 계속 넣기 시작함. 원철은 노부부에게 신재균과 건축물 수리 동의서를 작성해오라고 지시함.

-12월 6일

신재균과 노부부는 신재균이 앞으로 지을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더라도 진정을 넣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으로 동의서를 작성해줌.

-12월 20일

◎1차 강제철거 :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것에 대한 재해복

1) 99 1월 8일자 민원내용. 하지만 이 진정은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낸 진정이었다. 진정서에는 건축물이 고려대의 땅과 자신의 땅위에 지어져있는 불법 점유라고 주장하였으나, 나중의 재판에서 재차 확인된 결과, 이미 건물은 준허가 건축물로 등기가 되어있는 적법한 건축물이었다. 토지 역시 고려대의 토지와 경정된 토지였음을 96년에 확인하였다. 재해복구를 위한 수리는 복구 후 신고만 하면 되므로 진정내용은 잘못되었다.

구를 했던 10평가량에 대하여 잠겨있던 대문을 따고 들어와 철거를 함. 게다가 철거한 부분은 고려대에서 96년 6월 20일에 지적도를 첨부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한 위치에 있는 부분이었다.

<98년>

-11월 21일 ~ 11월 27일

부분 철거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여 안암동 건축담당에게 찾아가서 신고하고, 재해복구보수공사 승인을 받아 일주일 동안 수리함.

-12월 2일

●성북구청이 건축법 위법이라는 이유로 조남희(안수용의 남편)를 성북경찰서에 고발조치함.[2] 이는 안수용의 재해복구가 불법증축이라는 내용의 형사고발이었음. 고발 하면서 12월 8일까지 자체 철거하도록 권고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이행 기간이 지나지도 않은 12월 7일 오전에 2차 행정대집행 강제철거가 진행됨.

이 건은 성북구청이 노부부에게 강제이행금을 물도록 하였으나 노부부의 불법철거였다는 맞고소와 정식재판 청구를 통한 재판을 통해 강제이행금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3]

---

2) 주택 58554-2323 시행일자 98.12.2 위법 건축주 고발조치.

3) 형사사건 200과9549 건축법 위반(이의신청) 원결정일자 2002년 2월 15일 주문 : **사건 본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그 소유의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6-5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무단 상향증축(17㎡)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 1998. 12. 9.경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그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위반사항 발생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본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 제2항, 제250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9월 27일 판사 장준현 재판장

-12월 7일 오전 11시 경

◎2차 철거 : 성북구청이 잠겨있는 대문을 따고 2차 철거를 진행함. 이는 권고한 날짜인 12월 8일보다 하루 이른 날이었다. 심지어 당시 90세의 안수용의 노모가 혼자 있었는데, 집이 강제 철거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병세가 악화되어 돌아가심.

-12월

●신재균에 의한 '토지반환, 건물 철거(창고와 화장실이 있는 부분에 대한)'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됨. 이 민사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이 명백히 드러났음. 이에 할머니의 집이 정당하게 지어져있는 건축물이며 애초에 철거가 부당하였다는 것이 확인됨.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1심에서 신재균이 승소한 직후 2000년 4월 18일 신재균과 건축과 계장이 대동하여 안수용 할머니의 집의 창고 부분을 철거하고 대문의 절반을 가벽으로 막는 부당한 행정집행이 진행되었다. 이는 소송중의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최종 판결 전까지는 철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불법 철거이다.

확인된 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수용할머니의 집은 40년 이상 된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 82년 양성화[4]되어 「준허가건물」임을 확인함.[5] 이는 즉

---

4) 1982 이전에는 8.15해방, 6.25동란 및 도시계획에 의한 철거민의 주거마련 등으로 인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허가 건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으므로 엄격한 규제를 하지 못하였음.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무허가건축물을 「준허가건물로 인정」하는 양성화 방침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82. 4. 8.**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공포하여 일부 무허가건물을 구제하였고,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규정**(이하 "무허가 건축물 단속규정"이라함)을 제정하여 동 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거 82년 제1차 항공사진촬영일** 이전에 건축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기준하여 무허가 건물을 전수조사하여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무허가건축물 관리번호(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준허가건물」로 양성화하였음(무허가 건축물 관리번호 : 성북구청

할머니의 집은 정식으로 등기되어있는 정당한 건축물이며 이를 타인의 진정을 이유로 재해복구한 것에 대해 철거할 수 없음을 뜻함.

2) 할머니의 집이 있는 토지는 고려대학교의 토지가 맞으나 이는 그 옆에 고려대학교 국제관 뒤편 담벼락이 있는 땅과 맞바꿔서 사용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등기로 등록되어있음. 16-5번지(당시 안수용 할머니 소유지, 고려대학교에서 사용중)와 1-19번지 그리고 12-85번지(당시 고려대 소유지, 안수용 할머니의 자택이 있는 집)가 오래 전부터 바뀌어서 사용되었다는 사실[6]을 확인함. 이는 즉 안수용할머니의 집이 정당하게 소유한 토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것임.

3) 안수용할머니가 집을 산 사람과, 신재균이 집을 산 사람을 증인으로 심문하여 확인한 결과 안수용할머니의 집은 정당하게 안수용할머니에게 이전되었으며, 신재균이 이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이 확인됨.[7] 즉 신재균이 자신의 땅을 살 당시에도

5042호). 이에 따라 도시계획에 의하여 무허가건축물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주는 물론 전세입주자에게까지 아파트 입주권(속칭 딱지)을 부여하는 특혜를 주었음.

5) 성북구청장이 보낸 공문서 2000년 11월 23일 우리구 관내 안암동 5가 16-5호 조남희 건물이 안암동 5가 12-85호 및 동 5가 1-19호 귀 대학교 소유 토지를 부단 점용하고 있어 우리 구청에서 철거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조남희 소유 **건물은 40년 이상 된** 기존무허가 건축물로 양성화되어 '95. 12. 11.자 전소유자 박거식으로부터 조남희가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한 상태이며, 기존무허가 양성화된 건축물은 대통령령에 의거 특례법 절차에 따라 유보된 건축물로 철거할 수 없는 건축물임을 회신합니다.

6)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에 기재되어있음. 등기연월일 1995년 12월 8일 서류 접수번호 제 3287호

7) 99나91569 토지인도 건물철거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조남희 처 안수용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안암동 5가 16-1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소외 이남욱 이석우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 등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영상과 당심 증인 김유림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남욱은 1967년 7월 10일경 소외 개운사로부터** 위 안암동 5가 16-1 토지와 그 지상주택 1동 및 위 토지의 동쪽면과 맞닿아 있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6-5 대지 63m를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안암동 5가 16-1 토지의 북쪽면과 맞닿아 있는 같은 동 5가 1-19 학교용지 81m와 같은 동 5가 12-85 대지 36m를 각 소유하고 있던 소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그 소유인 위 각 토지의 일부는 이를 점유하지 않은 반면 위 이남욱의 소유로 된 위 안암동 5가 16-5 토지를 **고려대학교의 학교부지로 점유하고 있었기에** 위 이남욱은 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점유하지 않고 있는** 위 안암동 5가 1-19-12-85 각 토지의 지상에 무허가주택(이하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1968년 4월 24일경** 이를 그 부지와 함께 소외 **김유림에게 매도한 사실**(다만 이사건 무허가 주택은 미등기였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는

안수용할머니의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95년 당시 허위진정을 한 것이 확인된 것임.8)

<2001년>

●고려대학교에서 노부부의 건물이 점유하고있는 토지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함. 최종심에서 고려대학교가 승소하였음. 하지만 뒤(2004년 3월)에 이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기로 함.

<2003년>

-10월 31일 오전 9시 경

◎고려대 인부 등이 와서 건물을 철거하고자 안수용 할머니의 집의 방 벽을 허뭄. 할머니 부부는 천막에서 기거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고 한편 그 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위 각 토지가 아닌** 위 안암동 16-5 토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하 같다). 위 김유림은 이 사건 창고 부근에 있던 화장실(이 역시 위 이남욱이 건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그 화장실로 사용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 중 그 나머지 부분을 그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73. 7. 5.경 이를 그 부지와 함께 소외 **박인원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이 박인원도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사용하면서(다만 위 화장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창고를 건축하였다) 이 사건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5. 12. 8.경 이를 그 부지와 함께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위 안암동 5가 16-1 토지의 소유자였던 위 이남욱은 위 김유림, 박인원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이남욱이 1980. 10. 4. 사망함으로써 위 안암동 5가 16-1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상속받은 소외 이석우는 1994. 4. 2.경 이를 원고 등에게 매도할 때까지 위 주택의 북쪽 벽이 설치되어 있었던 **별지도면 표시 29, 30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의 남쪽 부분만이 위 안암동 5가 16-1 토지에 속하고 이 사건 토지는 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에 앞서 위 안암동 5가 16-1 토지를 소유하였던 위 이남욱이나 그 상속인인 이석우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다.

원고 신재균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창고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참고 : 신의칙에 위배되나 - 해석은 모순행위, 아주 나쁜 행위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위배되거나 위 철거 및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는 셈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고 신재균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사건 2001다63605 건물철거 토지반환

주문 : 원고 신재균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 신재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8) 매매 당시 16-1의 토지 일부가 자신의 부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 상대자 이석우를 찾아가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여 매매대금 중 3500만원 가량을 감액받은 사실이 재판에서 인정됨.

되었는데 이튿날 고려대 학생들이 이를 보고 항의하기 시작함.

-11월, 12월

37대 고려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우들이 철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선전물을 나눠주며 안수용할머니와 함께 항의행동을 진행함. 또한 총장님께 항의 서안을 전달하러 가기도 하였다.

<2004년>

○고려대학교가 안수용할머니에 대하여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함.[9)]

-3월 17일

고려대학교에서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민사소송이 잘못되었음을 판단, 이에 소송을 취하하였음. 고려대 관리처장님이 안수용할머니와 평화로운 합의를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등 노력함. 이에 안수용할머니가 [성북구청장, 고려대학교측, 인촌고시원 주인 신재균, 전철연대표, 안수용] **5자 면담을 요구하였음.** 이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여 전과 같이 하숙집 운영을 통해 가족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원상복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성북구청 실무자들과 성북구청장 등이 노부부의 건물철거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5자면담을 고의로 무산되게 함.[10)]

<2007년>

---

9) 2004카합315호

10) 이는 현재도 성북구청이 자신들의 행정집행인 철거가 부당한 것이 없었다는 태도로 이어지고 있음.

2003년 이후로 계속 안수용 할머니는 신재균의 허위진정으로 인해 부당한 법적 소송에 시달리게 한 점, 성북구의 불법 철거에 대한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었음. 하지만 성북구청은 끝내 자신들의 부당한 행정집행을 부인함.

●할머니의 항의행동 중에 당시 한나라당 성북구 구의원인 신재균에 대한 표현 중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신재균이 안수용할머니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형사소송을 제기함.

해당 표현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이 부과되었음. 하지만 사건담당 부부장 검사가 대법원에서 “상고인 신재균이 패소를 하였고 성북구청에 의한 강제철거는 부적절하였다는 대법원 판결을 하였으니 안수용과 합의할 것”을 제안함. 신재균 스스로 지난 2007년 5월 23일, 검사에게 자신의 잘못[11]을 인정하고 안수용과 성북구청장, 신재균이 합의할 것을 부부장 검사 앞에서 약속을 함.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하려고 하자 신재균이 검사에게 성북구청장, 성북구청 건축과 과장, 신재균, 안수용과 성북구청에 가서 합의 종결짓겠다고 약속하고는 도망을 다니며 만나주지 않는 행위로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음. 성북구청 건축과 과장은 합의를 하겠다고 하고 연기를 하다가 서울시로 발령이 나버림. 이에 지금까지 장기적인 억울한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성북구청 앞에서 고령의 노인 안수용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음.

성북구청 직속인 민원실장이 합의서를 요구하여 안수용이

11) 소유권인 토지를 상당수 빼앗고 성북구청장에게 허위진정서를 제출하여 불법적으로 강제철거하게 했음

직접 2007년 7월 9일 제출한바 있으나 신재균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점, 성북구청 감사과의 불법/부당성에 대한 사실 부인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현재도 성북구청에서 합의를 하자고 안수용할머니에게 제안하나 공문을 확인해보면 성북구의 부당철거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2012년>
안수용 할머니와 조남희 할아버지 부부의 정당한 보상 요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연초에 조남희 할아버지는 성북구청 앞에서 단식을 진행하였으나 성북구청은 이를 무시하였음.

-1월 13일
할아버지의 단식 투쟁 중 안수용 할머니는 그 앞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했으나 경비의 제지로 인해 실패하였음. 이에 놀란 성북구청이 1주일 안에 합의 종결짓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12)]

-조남희 할아버지는 현재 심장이 막히는 질환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중환자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생활고의 고통으로 안수용 할머니의 큰아

12) 할머니의 증언 : 노인이 자살하려고 하였다는 보고가 성북구청장 성북경찰서 정보과 과장 계장 등에게 알려져 성북경찰서 정보과 과장 직원이 다 현장에 오고 장시간을 불도 못겨다 불편한 시간이 지속되고 안수용은 땅을 치며 성북구청장에게 내땅과 집을 돌려달라고 하며 통곡을 하자 성북경찰서 정보과 계장님께서 성북구청장에게 보고하였느냐고 성북구청 총관리하는 담당자 행정지원과에 근무하는 홍정식에게 묻자 보고가 되었다고 답을 하고 성북구청 행정지원 계장 홍정식, 감사과 민원조사 담당 임근수와 동석한 자리에서 성북구청장과 보고 통화한 후 노부부와 일주일 안으로 조건없이 합의 종결짓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후도 성북구청장 비서실장인 이준기도 성북구청장이 평화로운 합의종결지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안수용에게 답변을 하고도 합의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어 고령에 노인인 조남희 할아버지께서 단식투쟁으로 사유재산권리를 찾고자 성북구청 후문에서 2개월 단식투쟁을 하다 졸도를 하여 119구급차에 실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입원을 하여 특진진단 주치의사님께서 진단결과 조남희 노인은 하체가 마비되고 심장이 두군데 핏줄이 막히는 죽음에 이르는 진단이 내려졌으나 현재도 성북구청장 감사과 감사담당관 최종환, 민원조사 담당 임근수가 성북구청장께서 노부부와 합의종결지으라고 지시하였다는 말만 하면서 거짓변명으로 조남희 노인이 죽음에 이르렀음에도 우롱 무시하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들은 우울증을 앓다가. 9월 14일에 생활고로 인하여 자살을 하고 말았음.

-현재 안수용할머니의 딸 역시 우울증을 앓고 있음.

-10월
안수용 할머니는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님 호소문>을 민원으로 접수하고 현재의 부당한 성북구의 행정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요구함. 고려대 학생들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관사 앞에서 저녁마다 기다리며 면담을 요구하였음.
성북구청은 이에 10/22일자 발송 공문으로 다시한번 구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민원 당사자간'의 중재안을 제안함. 이 제안에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도 정하지 않고 신재균과 고려대의 보상만 불특정한 금액으로 제시하고 있음.

[결론]
고려대학생들은 안수용할머니와 이웃 간의 연대의 정신으로 10여 년간 안팎으로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정 판결에 의해 민/형사상으로 명명백백히 안수용할머니의 주거지와 주거건물이 정당하였음에도 허위 진정을 접수하여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고의로 철거를 진행했던 성북구청과, 사실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인 진정과 민원을 넣었던 현 성북구의회 새누리당 구의원인 신재균은 안수용 조남희 부부가 고령의 약자이고 서민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계속 무시하였다고 판단하며 이 사태를 도저히 방관하면 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고려대 학생들은 2012년 11월 27일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에서 안수용 할머니에 대한 명확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요구사항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성북구청장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철거를 진행해야 함에도 허위 진정을 수용하여 불법/부당하게 집행된 철거에 대해서 명확히 사과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에 따른 보상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현재 새누리당 소속 성북구의회 구의원 신재균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진정을 넣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으며 부당한 소송과 압력을 통해 안수용 할머니에게 피해를 준 것을 인정하고 적절한 기준에 따른 보상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